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김위상 · 박성훈 · 박충권

우재준 · 서명옥 · 최은석

김선교 · 신성범 · 추경호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,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, 발사, 운용,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(Black Carbon: 화석연료, 바이오연료,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) 등 성충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,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,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4호 · 제25호 및 제16

조의2 신설).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“우주발사체”란 인공위성, 탐사선, 우주선 등 우주 물체를 지구 대기권 밖 또는 궤도에 투입하기 위하여 설계된 비행체를 말한다.

25. “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”이란 우주발사체의 제작, 발사, 운용,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, 온실가스, 화학 잔류물 및 우주 잔해물 등을 말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)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주발사체 발사 후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③ 정부는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~ 2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4. “우주발사체”란 인공위성, 탐사선, 우주선 등 우주 물체를 지구 대기권 밖 또는 궤도에 투입하기 위하여 설계된 비행체를 말한다.</p> <p>25. “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”이란 우주발사체의 제작, 발사, 운용,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, 온실가스, 화학 잔류물 및 우주 잔해물 등을 말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6조의2(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)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주발사체 발사 후 우주발사체</p>

배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
③ 정부는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